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칙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리에 입각하여 교회지도자와 사회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학문을 심오하게 연구하는 능력과 창조력을 함양케하며,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설치대학원) 일반대학원으로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두고, 전문대학원으로는 신학전문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는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설교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5.11.17.>

제4조 (과정) 본 대학원에는 박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5조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 9. 16., 2014.10.22., 2015.11.17.>

② 제1항의 각 대학원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으며,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본조개정 2008. 8. 21., 개정 2008. 11. 13.]

제 2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6조 (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박사학위과정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② 석사학위과정

1.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각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③ 위 각항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른 자세한 지원 자격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개정 2008. 8. 21.]

제8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법은 각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등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정과 방법은 별도로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개정 2008. 8. 21.]

제9조 (지원절차)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입학)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편입학 자격, 절차 및 학점인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8. 21.>

제11조 (재입학)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하며, 재입학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학칙시행세칙 및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8. 21.>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12조 (등록) 매 학기 소정 기간 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휴학)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육아,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21., 2011. 9. 16.>

제14조 (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적)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

-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④ 학력이 열등하여 진보의 가망이 없는 자.

제 4 장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점, 수료 및 학위수여

제17조 (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 9. 16., 2015.11.17.>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수업일수)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9조 (수업형태)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제,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주, 야간에 실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전일제,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이수학점) ① 대학원별, 학과별 이수학점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0. 1. 15., 2011. 5. 2., 2011. 9. 16., 2014.10.22., 2015.11.17.>

② 학생은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점수,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100-95	4.50
A0	94-92	4.20
A-	91-90	4.00
B+	89-85	3.50
B0	84-82	3.20
B-	81-80	3.00
C+	79-75	2.50
C0	74-72	2.20
C-	71-70	2.00
D	69-60	1.00
F	59- 0	0.00

② P(합격) : 실습, 실기, 논문연구, 논문 등의 성적으로 학점은 인정하나 성적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취득학점의 인정) 학업성적 평가결과 교과목별 성적이 "D"등급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학위과정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Bo"등급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신학대학원은 "Co"등급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24조 (학점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신학대학원 학생 중 학부에서 신학(부전공포함)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신학과목을 3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선수과목) 각 대학원과정에서 사전에 하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수료 및 졸업시기)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27조 (논문제출자격)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각종시험(성서중

합시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졸업연주심사(일반대학원 교회음악학과에 한하여 실시)에 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 9. 16.>

제28조 (논문심사) 대학원 박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9조 (학위수여) ① 박사 또는 석사학위는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논문대신 학과목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각 과정 및 학과를 졸업하는 자에게는 별표4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1. 9. 16., 2014.10.22., 2015.4.20., 2015.11.17., 2016.2.22.>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수료증서수여)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이 통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31조 (명예박사) 학문연구와 사회, 교계,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1.>

제 5 장 공개강좌, 연구생, 외국인 학생

제32조 (공개강좌)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3조 (연구과정) ① 각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부설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 입학자의 자격·신분·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 (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단, 입학자격, 시행방법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21.>

제 6 장 상 벌

제35조 (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 (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단,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학사경고) 학업성적이 불량한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제 7 장 직 제

제38조 (대학원장) 각 대학원에 원장 1인을 둔다. 원장은 각 대학원을 대표하며, 전 교학업무를 통괄한다.

제39조 (전공주임교수) 각 전공분야에 주임교수를 둔다.

제40조 (지도교수) 대학 교원 중에서 학생의 개별연구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제41조 (교학과) 대학원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학과를 두며,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제 8 장 대학원 위원회

제42조 (구성)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각 대학원 위원의 수는 각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각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3조 (임기) 대학원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44조 (심의사항) 대학원 위원회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이 시행한다. <개정 2008. 8. 21.>

- ①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단, 신학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은 교수회에서 의결)
- ②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④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⑤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 ⑥ 학생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 ⑦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5조 (소집 및 심의) 각 대학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제 9 장 신학대학원 및 신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제46조 (구성) 교수회는 대학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제47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8. 21.>

- ①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 ③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10 장 부설기관

제48조 (부설기관)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1. 5. 2.>

- ① 삭제 <2011. 5. 2.>

[본조신설 2008. 11. 13.]

제 11 장 준용규정 등

제49조 (준용규정)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21., 2008. 11. 13.>

제50조 (학칙 개·폐) 이 학칙의 개정 및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 11. 13.>

부 칙

- ① (시행일자)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 학칙의 폐지) 종전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임상목회대학원 및 선교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특수대학원의 전문학위 수여는 1997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 이 학칙 제17조에 불구하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2003년 2월까지 학위수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 ① (목회대학원의 신학대학원 통합으로 인한 경과조치) 목회대학원이 신학대학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을 신학대학원으로 통합한다.
- ②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학위수여의 적용)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기독교교육학과의 문학석사 학위수여는 2001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②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전문학위수여의 적용) 특수대학원의 전문분야를 포함한 전문학위수여는 2001년 1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②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7조 사회복지대학원 외국어시험 제외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명칭이 변경된 신학전문대학원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대학원 석·박사과정 이수학점 조정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신학전문대학원 수여학위명 변경시행은 2004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2. 신학전문대학원 정원조정과 사회복지대학원 수업연한, 재학연한조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0조 ①항 [별표3]은 사회복지대학원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5조 ①항 [별표 1]은 상담대학원 및 신학전문대학원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제29조 ②항 [별표 4]는 신학전문대학원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0조 ①항 [별표 3]은 신학대학원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5조(입학정원) ①항 [별표1], 제17조(수업연한, 재학연한) ①항 [별표2], 제20조(이수학점) ①항 [별표3], 제29조(학위수여) ②항 [별표4]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5조(입학정원) ①항 [별표1]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3조(설치대학원), 제5조(입학정원) ①항 [별표1], 제17조(수업연한, 재학연한) ①항 [별표2], 제20조(이수학점) ①항[별표3], 제29조(학위수여) ②항 [별표4]는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9조 ②항 [별표4]는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015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이미 졸업한 자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 각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비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12	
			사회복지학과		
		예·체능	교회음악학과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42	
			기독교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예·체능	교회음악학과		
	계				54

전문대학원					
대학원명	과 정	계열	학 과	입학정원	비고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24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22	
			선교학과		
계				46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비고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16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15	
상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상담학과	33	
설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26	
계				234	

[별표 2] 각대학원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일반대학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수업연한	재학연한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3년	7년
			사회복지학과	3년	7년
		예·체능	교회음악학과	3년	7년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2년	4년
			기독교교육학과	2년	4년
			사회복지학과	2년	4년
			보육학과	2년	4년
			유아교육학과	2년	4년
		예·체능	교회음악학과	2년	4년

전문대학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수업연한	재학연한
신학 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3년	8년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2년	5년
			선교학과	2년	5년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수업연한	재학연한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3년	5년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2년	4년
상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상담학과	2년6개월	4년6개월
설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2년	4년

[별표 3] 각대학원별, 학과별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이수학점	비 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42학점 (논문6학점포함)	
			사회복지학과	42학점 (논문6학점포함)	
		예·체능	교회음악학과	42학점 (논문6학점포함)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30학점 (논문3학점포함)	
			기독교교육학과	30학점 (논문3학점포함)	
			사회복지학과	30학점 (논문3학점포함)	
			보육학과	30학점 (논문3학점포함)	
			유아교육학과	30학점 (논문3학점포함)	
	예·체능	교회음악학과	30학점 (졸업연주3학점포함)		

전 문 대 학 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이수학점	비 고
신학 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45학점 (논문 9학점 포함)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33학점 (논문 6학점 포함)	
			선교학과	33학점 (논문 6학점 포함)	

특수대학원					
대학원명	과정	계열	학과	이수학점	비고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92학점 (논문 6학점 포함)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33학점 (논문 6학점 포함)	
상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상담학과	37학점 (논문 6학점 포함)	
설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33학점 (프로젝트 3학점 포함)	

[별표 4] 대학원별 수여학위 종별

일반대학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수여학위	비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예·체능	교회음악학과	음악학박사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석사	
			기독교교육학과	문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보육학과	문학석사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예·체능	교회음악학과	음악학석사	

전문대학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수여학위	비고
신학 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박사(구약신학)	
				신학박사(신약신학)	
	신학박사(조직신학)				
신학 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박사(기독교윤리학)	
				신학박사(교회사)	
				신학박사(실천신학)	
				신학박사(선교신학)	
				상담심리학박사(상담심리학)	
				신학석사(성서신학)	
				신학석사(이론신학)	
신학석사(실천신학)					
신학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석사(성서신학)	
				신학석사(이론신학)	
신학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선교학과	신학석사(선교신학)	
				신학석사(선교신학)	

특 수 대 학 원

대학원명	과 정	계 열	학 과	수여학위	비고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 학 과	신학석사(신학)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	
상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상담학과	상담학석사(상담학)	
설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석사(신학)	